파생상품보험 인수규정

제 정 : 2008. 5.26
1차 개정 : 2010. 6.23
2차 개정 : 2011.10.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출보험 관계법규(업무방법서를 포함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생상품성 수출보험종목의 인수업무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종목) 제1조의 파생상품성 수출보험종목은 다음 각호의 수출보험종목을 말한다.

1. 이자율변동보험
2. 환변동보험

제3조(개별특약의 체결) 개별특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담당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세부사항) 파생상품성보험의 헷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

제 2 장 이자율변동보험

제5조(적용대상거래) 이자율변동보험의 적용대상거래는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으로 인수 또는 인수예정인 거래로 한다.

제6조(OECD 공적수출신용협약의 준수) 이자율변동보험 대상거래는 OECD에서 정한 공적수출신용협약에 따른 수출신용공여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 ①금융기관이 이자율변동보험청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는 경우 이자율변동보험증권을 발급한다.
②청약기한, 금리적용기준, 기준 스프레드, 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장 환변동보험

제8조(환변동보험의 목적) 국내기업(금융기관 포함)이 환변동에 따른 환차손익 발생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위험 헤지방안으로서 환변동보험을 운영한다.

제9조 삭제 <2011.10.1.>

제10조(세부사항) 환변동보험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정한다.

부 칙 (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인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